



셧티코



산업안전 환경 알리미

2021년 4월1일 시행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시기안내

셧티코 고객사님 안녕하십니까! 셧티코 산업안전 환경 알리미입니다.

이번달 알리미는 2021년 4월 1일, 화학물질관리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실시되는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 첨부1.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제도 소개 (화학물질안전원) 참조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가 무엇인가요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통합된 제도로,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기 위해 제출 면제와 2군, 1군 사업장으로 나누어 제출하게 됩니다.

기존 (21.3.31 까지)	현재 (21.4.1 이후)
장외영향평가서 (소량기준으로 간이/표준 장외영향평가서로 제출)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최대보유량을 기준으로 면제, 2군, 1군으로 분류 제출)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위해관리계획서 (사고대비물질 수량기준 이상시 제출)	

2. 우리 사업장은 몇 군 사업장 인가요 ?

우리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 보유량에 따라 제출 면제가 되거나, 2군, 1군으로 분류되어 제출하게 됩니다.

- (1) 최대보유량 (물질별 산출)이란?
사업장 전체 부지 내 모든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에서 어느 한 순간이라도 최대 보유할 수 있는 양
- (2) 최대보유량 산정방법
물질별 함량기준이상 취급시설의 설계용량의 합 + 보관시설 보관구획도상 최대보유량의 합
>>> 제외시설 : 함량기준 미만 취급시설 투입물질량, 사외배관체류량, 탱크로리 양은 산정에서 제외
- (3)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제출대상, 상위, 하위 규정수량 확인
한가지 물질이라도 최대보유량이 규정수량 이상 시 제출 대상이며, 물질 종류에 따라 하기 관련 법규 로 확인 가능함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 **첨부2 참조**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 **첨부3참조**

(4) 1군 사업장, 2군 사업장 구분

- 1)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물질 어느 하나라도 취급하는 사업장
 - 2)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의 물질 어느 하나라도 취급하는 사업장
- ※ 단,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산업안전 환경컨설팅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PSM/이행평가/자체감사/위험성평가
위해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물인허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플랜트설계, 구매, 공사(EPC)
방폭/산업안전 EPC
전문소방설계 및 공사
산업플랜트
화학/전력 플랜트
원자력/발전플랜트
특수설계&컨설팅

산업안전 환경진단
안전관리대행
산업안전진단
연구실정밀안전진단
사업장 시설물관리
비산배출진단점검

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

| 주식회사 셧티코 |

| 주식회사 셧티코 엔지니어링 |

www.safetyko.co.kr | www.safetyko.com

서울본사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 803~804호 (가산동,IT캐슬) | Tel : 02-6263-7702 | Fax : 02-6263-7703

부산본부 :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9번길 43 보승빌딩 206호 | Tel : 051-465-7702



셉티코



산업안전 환경 알리미

2021년 4월1일 시행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시기안내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언제 제출하면 되나요 ?

- (1) 신규 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전까지 제출
(기존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업체는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제출 필요 없음)
- (2) 변경 제출
변경완료일 30일전까지 제출
 - * 변경제출 대상
 - 1) 아래의 변경으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공간 내 위치 이동은 제외)
 -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 총괄영향범위 :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
 - 2)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 (3) 재제출
최종 적합 이후 시점 기준 5년 경과시 재제출
 - * 재제출 대상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
- (4) 부적합 통보시
2개월 이내 재제출

4. 주요 문의사항 (화학물질안전원 제도설명회 Q&A 일부 발췌)

- (1) 개정법 시행 전에 적합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가 있으면 '21년 4월 1일 이후에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가능한가요?
 - ☞ 변경이 발생되지 않는 한 기존에 적합 받은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서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가능하며, 변경사항(시설 신·증설, 이설 및 물질 변경 등)으로 작성 수준 및 총괄영향범위 확대 등 개정규정의 제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장 단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변경허가 진행

산업안전 환경컨설팅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PSM/이행평가/자체감사/위험성평가
위해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물인허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

| 주식회사 셉티코 |

| 주식회사 셉티코 엔지니어링 |

플랜트설계, 구매, 공사(EPC)
방폭/산업안전 EPC
전문소방설계 및 공사
산업플랜트
화공/전력 플랜트
원자력/발전플랜트
특수설계&컨설팅

산업안전 환경진단
안전관리대행
산업안전진단
연구실정밀안전진단
사업장 시설물관리
비산배출진단점검

www.safetyko.co.kr | www.safetyko.com

서울본사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 803~804호 (가산동,IT캐슬) | Tel : 02-6263-7702 | Fax : 02-6263-7703

부산본부 : 부산시 중구 중창대로 9번길 43 보승빌딩 206호 | Tel : 051-465-7702



셉티코



산업안전 환경 알리미

2021년 4월1일 시행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시기안내

4. 주요 문의사항 (화학물질안전원 제도 설명회 Q&A 일부 발췌)

- (2) 이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4월 1일까지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
- ☞ 1) 4월 1일 이전에 적합을 받았을 경우
해당 사업장이 개정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이 된다면, 개정법 시행 후 시행규칙 제19조의 3 및 화학물질안전원 고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제출 수준을 판단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 2) 4월 1일 이전에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가 4월 1일 지나 검토 중이고 부적합을 받았을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재제출
- (3)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 모두 면제되는지요?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영업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의 다른 의무는 적용대상임**
- (4) 사업장 내에 위치한 하위규정 수량 미만의 실험실 등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나요?
- ☞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된다면 **사용량에 상관없이** 유해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설비들을 포함하여 하나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제출
- (5) 기존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대상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면제인가요?
- ☞ 기존에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대상이었다고 해서 **모두 제출 제외 대상은 아니므로**,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별 최대 보유량을 확인하여 하위규정 수량 미만인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면제 (작성 수준을 결정하는 규정수량은 개별 설비별 소량기준과 무관함)
- (6) 사업장 내에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적합을 받은 단위공장과 표준으로 적합을 받은 단위공장이 섞여 있습니다. 이 중 표준 장외영향평가서에 해당하는 단위공장만 규정수량이상 사용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이라면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적합을 받은 단위공장은 제외해도 되나요?
- ☞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된다면 **취급량에 상관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설비들을 포함하여 하나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제출

5. 셉티코 컨설팅 강점

- (1) 300여건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승인 실적
- (2) 각종 인허가 진행에 따른 사업장 맞춤형 경제 설계
- (3) 풍부한 현장경험의 전문가들을 통한 신속 체계적인 업무진행

산업안전 환경컨설팅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PSM/이행평가/자체감사/위험성평가
위해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물인허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

| 주식회사 셉티코 |

| 주식회사 셉티코 엔지니어링 |

플랜트설계, 구매, 공사(EPC)

방폭/산업안전 EPC
전문소방설계 및 공사
산업플랜트
화공/전력 플랜트
원자력/발전플랜트
특수설계&컨설팅

산업안전 환경진단

안전관리대행
산업안전진단
연구실정밀안전진단
사업장 시설물관리
비산배출진단점검

www.safetyko.co.kr | www.safetyko.com

서울본사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 803~804호 (가산동,IT캐슬) | Tel : 02-6263-7702 | Fax : 02-6263-7703

부산본부 : 부산시 중구 중창대로 9번길 43 보승빌딩 206호 | Tel : 051-465-7702